

새로운 소모임의 구성 알림 및 경과 보고

2015. 7. 7.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게시한 바와 같이 인권 관련 사법제도 연구 모임에 대한 저의 제안에 동참한 14명의 회원이 같은 달 21일 준비모임을 하였고, 향후 모임의 운영 방식과 연구 계획 등에 관한 구상을 할 시간이 필요하여 제1회 모임으로 2015. 8. 11. 현재 사법부의 현안인 ‘상고법원’에 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오고 간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의견의 주요 논거는, ① 대법관 1인당 3,000건 정도에 이르는 현재의 대법원 업무의 과중한 부담은 중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를 긴급하게 해소할 필요 (양○○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100건 선고를 공약처럼 말하고 취임하였으나 실체는 20여 건 선고에 그칠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함),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대법원의 위상과 판결의 영향력이 작게 느껴지는 것은 그 정책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므로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켜 정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 ③ 경력이 많은 상고법원 판사가 변론을 통해 사건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만장일치를 통해 판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④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원 구성원들도 반대하지 않았던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와 근본적 차이가 없어 도입에 따른 법원 내부와 외부의 거부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상고부를 서울에만 설치하려는 것에 대하여 지방 소재 법관들의 반발이 있기는 하였음), ⑤ 심리불속행 제도의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이 가져간 문구를 수정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파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고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점, ⑥ 상고허가제가 더욱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이는 전두환 정권에 의하여 도입되었다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폐지된 역사적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고, 반대 의견의 주요 논거는 ①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부족하였음, ② 헌법재판소와 달리 구체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라는 법원의 역할에 비추어 정책기능과 권리구제기능은 양분할 수 없고, 전원합의체만 하면 마치 정책기능이 회복된다는 식의 논리는 실증되지 아니함, ③ 법관들을 상대로는 ‘업무량이 늘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반면, 변호사나 국민들을 상대로는 ‘심리불속행을 폐지하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통하여 실질적 변론을 열며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모순된 설명이고, 결국 법관의 업무부담 가중이 수반될 것인 점(현행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도 충분한 기록 검토를 통한 결론으로서 그 이유기재만 간략히 한 것임에도 이를 폐지하면 기록을 더 자세히 보고 권리구제도 충실해 지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④ 당사자는 상고법원까지 심리의 연장을 고려하여 오히려 하급심을 무시하고 상고법원에 더 집중하여 상고사건이 오히려 증가하고 하급심 충실화에도 역행하게 되는 점(하급심 인원을 빼서 상고법원을 구성하는 문제는 법관 충원으로 해결하면 됨), ⑤ 승소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소에 응소하는 부담

이 증가되고 판결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오히려 권리구제가 소홀해지고 소송비용이 증가함, ⑥ 하급심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남상소를 막을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며 심리불속행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면 현재의 상고제도 아래에서도 상소 사건 감소를 통한 상고심의 정책기능 강화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그동안 소모임 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 앞으로의 회의는 1년 무렵의 기간에 해당하는 주제의 발굴과 연구 담당자 선정을 통하여 외부 발표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발표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정하였고, 제2회 모임의 주제는 ‘바람직한 합의부의 조직과 운영’으로서 부장과 배석의 입장에서 바라본 합의부의 문제점을 공유, 토론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합의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모임 일시는 2015. 9. 14.(월) 오후 7:30

* 장소: 카페 인프라 (?)